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55
------------	------

2020.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5. 25. 오중석 의원 발의 (2020. 5. 29. 회부)

2. 제안이유

-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이러한 문제들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항 중 심리상담, 무료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오중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행	개정안
<p>제6조의2(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p> <p>2.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p> <p>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p> <p>〈신설〉</p> <p>〈신설〉</p> <p>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6조의2(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비용 -----</p> <p>3. (현행과 같음)</p> <p>4. <u>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u></p> <p>5. <u>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 최근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행·사망사고¹⁾ 이후 공동주택 경비원의 갑질피해 예방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치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 조문의 제명을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1) “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경비초소 분향소에 주민 추모물결”, ‘20.5.11, 연합뉴스 (붙임-1.참조)

- 참고로 강북구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의무,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준칙을 개정하였으며²⁾, 강북구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함³⁾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어⁴⁾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이 개정조례안은 폭언·폭행 등 초기 상황 발생 시 심리·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보다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인식전환, 공동체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바, 조례안 개정 이후에도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개정사항(‘20.6.10 공포) : 제23조(입주자들의 의무) 중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추가,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신설(붙임-2.참조)

3) 종합대책(‘20.5.14) 주요 내용

①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5.18 ~6.19
- 대상단지 : 강북구 관내 관리사무소 위탁·자치 관리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60개소
- 조사방법 : (1차) 서면조사, (2차) 현장방문 조사 및 면담
- 조사내용 : 경비원 현황, 운영 방식, 근무형태, 복지 및 근무환경 등

② 강북구 조례안 제·개정 추진 중 (붙임-3.참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5.28. 구본승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2020.5.27. 김명희 의원 대표 발의

③ 강북구립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

4) 법령개정 건의사항(2건, 2020.5, 서울시구청장협의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붙임-4.참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단서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단서 신설

- 다만, 개정조례안 중 조문 제명을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경비원 외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을 제명에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붙임 1】 관련 언론보도

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경비초소 분향소에 주민 추모물결

송고시간2020-05-11 12:20 / 김철선 기자 연합뉴스 (kc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생전에 항상 밝고, 성실하시던 분이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추모하는 주민들이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 있었다.

분향소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막걸리, 향초가 조촐하게 마련됐다. 경비초소 유리창은 "항상 친절히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돕겠다" 등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다.

분향소에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올린 아파트 주민 송모(67)씨는 "(고인은) 항상 주민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이였다"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너무 허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뭐라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말도 안 된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전날 오전 2시에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경비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A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경비초소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이튿날 상해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B씨의) 소환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이 이웃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달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붙임 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주요 개정안(‘20.6.10)

○ 입주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규정 신설 (제23조제2항제7조)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7.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89조)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3】 강북구 조례 제정·개정안 발의 현황('20.5 현재)

○ (297)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 ▶ 2020. 5. 27. 김명희 의원 대표 발의(심의 예정)
- ▶ 주요 내용
 - 노동 인권 교육, 우수 사례 홍보,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노동 인권보호 시책 추진(안 제4조)
 - 사용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권고, 노무관리 상담 제공, 국가 노동정책과 연계 및 고용 보조금 지원(안 제5조)
 - 경비원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 고용 안정 상담소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 (29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20. 5. 28. 구본승 의원 대표 발의(심의 예정)
-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에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내용 추가(안 제1조)
 - 공동주택, 입주자등, 관리주체,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1조의2)
 - 단지 내 노동자의 적정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청장,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를 신설(안 제1조의3)
 -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신설(안 제5조)
 -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2)

【붙임 4】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 (강북구 → 고용노동부/국토부)

○ 근로기준법 개정

- 도급 사업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인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도급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을,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인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본다.(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정건의안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 ----- ----- 단, 도급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을,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인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의무 부여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할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생략)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할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